

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7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하남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4. 10. ~ 4. 17.
- 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맨발걷기”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.
2. “맨발 산책로”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.
3. “도시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며,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)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맨발걷기 활성화 사업)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맨발 산책로의 조성·확충 및 정비
2.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보수
3.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4.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등의 발굴, 조사 및 연구
5. 맨발걷기 관련 문화·예술·학술 사업
6.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**국민건강증진법**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·시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